

#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·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2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-6191(2022.12.08.)호 ‘2021년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’를 반영하여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정하고,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성차별적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용어 및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)
- 약칭 삭제 및 추가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)

## 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##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6. 29. ~ 2023. 7. 19.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4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## **[붙임 1]**

# **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·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·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(이하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” 이라 한다)” 을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” 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” 을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(이하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 : 유희행위” 를 “청소년통행금지구역: 성매매행위” 로,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청소년통행제한구역 :” 을 “청소년통행제한구역:” 으로, “기타청소년” 을 “그 밖에 청소년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별표1” 을 “별표 1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표2” 를 “별표 2” 로, “감안” 을 “고려” 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저지하거나” 를 “막거나” 로, “퇴거케하기” 를 “나가게 하기” 로 한다.

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육청소년과장 이 세 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육청소년팀장 한 대 희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최 윤 진 (행정 2219)

**[붙임 2]**

**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</u> (이하 “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</u> ” 이라 한다)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		-----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</u> -----
제2조(지정기준 및 대상)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</u> 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.		제2조(지정기준 및 대상)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</u> (이하 “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</u> ” 이라 한다)-----		-----.
1.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</u> : 윤락행위 <sup>가</sup>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, <u>기타</u>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		1. <u>청소년통행금지구역</u> : 성매매행위-----		----- <u>그 밖에</u> -----
2. <u>청소년통행제한구역</u> :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, 청소년 유해매체물, 약물등의 판매·대여·유통·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, <u>기타</u>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		2. <u>청소년통행제한구역</u> : -----		----- <u>그 밖에 청소년</u> -----
제3조(통행금지 및 제한시간)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<u>청소년통행금지</u>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. 다만, 부모, 교사 등 실질적으로 <u>당해</u> 청소년		제3조(통행금지 및 제한시간) ①-----		----- <u>해당</u> -----

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모,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제4조(지정절차)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 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·토론회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·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) 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별표1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별표2와 같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설치하되, 해당구역의 면적등을 감안하여야 한다.

제7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청소년이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통행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퇴거케하기 위하여 청소년선도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.

②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해당 -----  
-----.

제4조(지정절차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) ① -----  
----- 별표 1-----  
-----.

②-----  
----- 별표 2-----  
----- 고려-----  
-----.

제7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 
----- 막거나 -----  
----- 나가게 하기 -----  
-----.